산·학 협력 협약서

천성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대전보건대학교(이하 "을" 이라 한다)는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보건 증진과 고도 기술 정보화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갑"과 "을"이 추구하는 창립이념을 바탕으로 상호간에 필요로 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합의정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상호간 우호적이고 호혜적인 정신에 입각하여 신의와 성실로서 상호 협력한다.

제3조(공동사업) "갑"과 "을"은 상호 합의 정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양측의 소정 절차에 따라 공동 협력한다.

1. 인력교류는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 ① "갑" 인사의 대학교육 참여(겸임교수 및 강사)
   - ② "갑" 인사의 대학 산학협력위원 위촉
   - ③ "을" 교수의 "갑" 현장연수 협조
   - ④ "을" 학생의 "갑" 현장실습 협조
   - ⑤ "갑"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 및 취업 협조
   - ⑥ "갑"과 "을" 간의 위탁교육
   - ⑦ "갑"과 "을" 간의 기술 공동개발
2. 정보교류는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 ① "갑"의 직무분석, 정보화교육, 산업체교육 및 평가
   - ② 양 기관이 보유한 기술정보의 이용(도서 및 자료열람 등)에 있어 상호 최대한 편의 제공
   - ③ 양 기관이 개최하는 세미나, 워크샵, 연구발표회 및 전문가 초청 강연회 등에 있어서 원활한 정보교류 및 참여
   - ④ 관련분야의 교육과정 및 교재 공동개발
3. 연구개발협력은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 ① 공동 관심분야에 대하여 상호 기술협력 및 연구와 인력참여의 활성화 도모
   - ②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자료 및 시설에 대한 상호 활용 지원

제4조(소요경비)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상호협의에 따라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수 산업체 연수 시 경비는 "을"이 부담하고, 산업체인사의 대학 연수 시 "갑 "이 부담한다.

제5조(협약의 수정) "갑"과 "을"이 협약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안)을 작성하여 쌍방의 합의로 수정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해지)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과 "을" 어느 한쪽이 폐쇄되거나 명의가 타인에게 양도 되었을 때
2. 본 협약의 내용을 고의로 위반 시
3. "갑"과 "을"은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1. 본 협약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안은 발생시 따로 정한다.
2.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 년 08 월 31 일

천성장애인보호작업장	대 전 보 건 대 학 교
원 장 이 태 헌	총 장 서 중 석
(서명)	(서명)